

의안번호	2207158
의 퇴 인	정태호의원
회 답 일	2025.1.7.
추계번호	24B639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¹⁾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또는 「환경보건법」 제13조²⁾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평가분야 전문가가 각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제2항)	의무지출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세 사유

- 안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포함될 경우, 전문가 수당 지급 등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에서는 이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는데 따른 비용임
- 안 제8조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건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시 참석해야 하는 기후변화 관련 민간전문가의 수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회의 개최 횟수는 총 94회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1명 이상 등을 포함하고 있음³⁾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하여 「환경성평가 운용기반 강화 및 관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사업을 수행 중이며 2025년 기준 해당 예산은 각각 27억 9,400만원, 3억 3,700만원으로 총 31억 3,100만원임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3)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단일의 고정적인 조직이 아닌 특정 계획 및 사업마다 구성되는 조직임(구체적인 구성 요건은 참고자료 1을 참고)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요건

□ 구성 : 10인 내외 (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위원)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

- ①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1명 이상
- ② 계획 수립기관 장 또는 승인기관 장 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1명 이상
- ③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④ 협의기관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⑥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장(협의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⑦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각 1명 이상
 - 해당 계획·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경우)